

의안번호	2208952
의 퇴 인	윤건영의원
회 답 일	2025.5.22.
추계번호	25B158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함(제1항) <u>24의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적용대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이하 “유흥주점영업시설”)이 추가될 경우, 현행법 제13조제1항²⁾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검사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1) 제36조(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주점영업시설의 업소 수는 2025년 기준 총 25,757개소임
-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 검사율은 2023년 기준 4.5%임
 - 2023년 기준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수는 54,193개소이며, 이 중 2,426개소에 대하여 오염도검사가 이루어졌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통주점영업시설의 규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유통주점영업시설의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